

#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223
----------	------

2025. 1. 16.  
총무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. 8. 안영헌 의원  
나. 회부 일자: 2025. 1. 8. 회부  
다. 상정 일자: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1. 16.) 상정,  
“원안의결”

## 2. 제안 요지

### 가. 제안 이유

- 광양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고령화 시대 속 어르신 공경 문화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
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지급대상, 지급물품, 지급기준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 
(안 제3조~안 제7조)
- 지급방법,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 
(안 제8조~안 제10조)
- 지급대상자 관리,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
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### 3. 검토 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광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,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존중과 관심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
- 본칙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에는 정의(안 제2조), 지급대상(안 제3조), 지급물품(안 제4조), 지급기준(안 제5조), 신청안내(안 제6조), 지급신청(안 제7조), 지급방법(안 제8조),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(안 제9조~제10조), 지급대상자 관리(안 제11조),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(안 제12조) 등을,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- 사회보장사업 신설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결과, 1인당 1회 100만 원 이내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요청 하였으나, 최종적으로 1인당 1회 50만 원 이내로 협의 완료하였음.
-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 및 조례안의 내용과 조문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출석위원 6명)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붙임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## 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광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수어르신”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장수축하물품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.

**제3조(지급대상)**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(이하 “지급대상자”라 한다)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.

**제4조(지급물품)**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
- ② 지급 물품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하며, 물품 선정시 지급대상자의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급기준)**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.

-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

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

**제6조(신청안내)**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급신청)**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급방법)** ① 읍·면·동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지급제외)**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
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

**제10조(환수조치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

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**제11조(지급대상자 관리)** 시장은 장수축하물품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)** ①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후 지급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.  
②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)**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101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. 이 경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.



[별지 제2호서식]

##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

위임받은 사람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 (연락처)		관 계	
	수임사유			

「광양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:

위임하는 사람 주소:

광양시장 귀하

구비서류

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

